



용산구

미래도시
용산

수신자 한국마사회장

(경유)

제목 건축허가(대수선 등)신청서 불허가 처리 통지[청파로 52(한강로3가 16-48)]

1. 귀 기관이 우리구에 2015.06.26. 제출하신 관내 청파로 52(한강로3가 16-48) 기존 건물의 변경사용을 위한 건축허가(대수선 등)신청서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허가 처리함을 알려드리며, 2015.07.16. 제출하신 민원서류『용산지사 건축인허가 및 용도변경(건축물대장 표시변경) 조속처리 요청』에 대한 답변은 본 문서로 갈음 회신합니다.

가. 건축허가(대수선 등) 신청 내용

○ 대수선

- 지상1~7층의 바닥스라브 일부 해체후 경사로 신설에 따른 층별 방화구획의 변경
- 큰보를 제외한 작은보(큰보와 큰보사이 연결) 해체후 보강

○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

- 지상4층 40.17㎡를 문화및집회시설(마권장외발매소)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(휴게 음식점)으로 용도변경
- 지상1~지상7층 문화및집회시설(마권장외발매소)에서 문화및집회시설(전시장,문화관, 체험장)으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[지상4층 40.17㎡ 제외]

나. 불허가 사유

○ 우리 구는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 보호라는 공익 목적에 따라 귀 기관에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주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여러 차례 요청한 바 있습니다.

○ 귀 기관이 우리구에 제출하신 건축허가(대수선 등)의 내용은 지상1~18층 마권장의 발매소의 일부층(지상1~7층)을 “가족형 놀이 여가시설”로 변경하기 위한 내용으로, 마권장외발매소를 주용도로 사용중인 청소년유해업소 건물에 청소년들도 출입이 가능한 “가족형 놀이 여가시설”을 설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며, 인근 주민들의 주거환경과 학생들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불허가 처리합니다.

○ 다시 한번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의 영업중단과 서울시 외곽이전을 강력히 재 요청 하며, 우리구는 앞으로도 용산 마권 장외발매소 서울시 외곽이전 관철을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.

2. 아울러, 우리 구의 상기 처분에 대해 행정구제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.

가. 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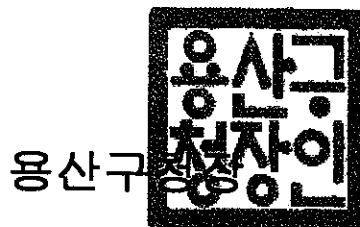
- 우리 구 행정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규정에 의거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

나.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

- 행정심판의 재결청은 서울특별시이며 행정심판 청구서는 처분청인 용산구청이나 서울특별시에 접수하여야 하며,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제기하여야 하고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이 경과되면 제기할 수 없음

다.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

- 행정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하여야 하며,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면 제기할 수 없음. 끝.



★주무관 김범상 건축디자인팀장 임낙종 건축디자인과장 07/29 권영섭

협조자

시행 건축디자인과-16880 (2015.07.29.) 접수

우 140-704 서울특별시 용산구 녹사평대로 150(이태원동)

/ <http://www.yongsan.go.kr>

전화 (02)2199-7502 /전송 (02)2199-5720 / kbs686@yongsan.go.kr

/ 공개